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2021.11.22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전주효문초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생활교육 사항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의거하여 학생생활교육(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생활교육원칙) 생활교육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① 학생의 생활교육은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의 생활교육은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의 생활교육은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④ 학생에게 생활교육을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생활교육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改悛)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생활교육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시험 기간은 생활교육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⑥ 생활교육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5조(설치) 학생의 생활교육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6조(구성 및 직무)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생활담당교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며, 교무부장 및 부장교사, 학부모대표 등을 위원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 보건교사 등을 비상임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 ③ 각 역할은 아래와 같다.
 - 1. 위원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2.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를 겸한다.
 - 3. 위원 : 학생 생활교육 사항을 심의한다.
 - 4. 간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을 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1년으로 한다.

- ② 임기 기간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생활교육 사안에 대해 교직원 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9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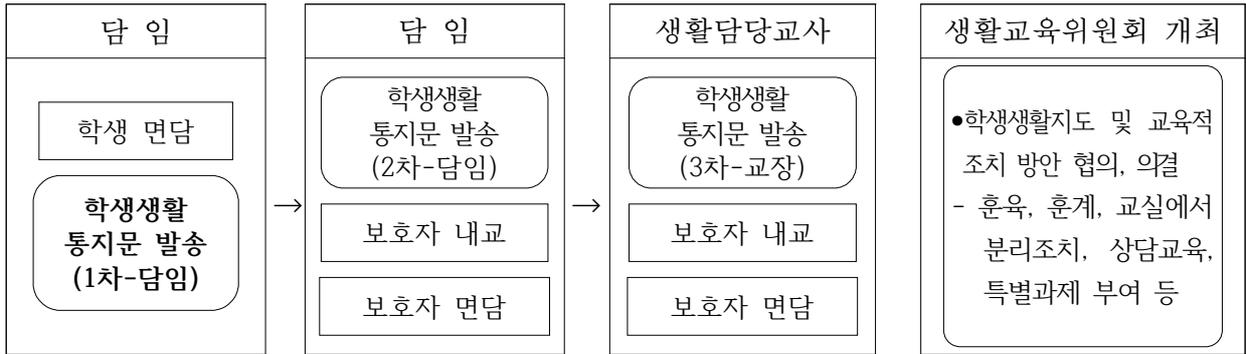
제10조(소집 사안) 학교 규칙을 위반하여 교육적 조치 및 징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며 그 사안은 다음과 같다.

- 1. 학습권 침해(수업 방해, 학습 지시사항 거부 및 과제 상습 불이행 등)
- 2. 학교 기물 또는 구성원의 물건 파손, 절도
- 3. 시험 중 부정행위
- 4. 교직원 및 학교 교육활동 지도(봉사)에 대한 불손한 태도
- 5. 기타(게임·인터넷·음란물·휴대전화 중독, 흡연 및 음주, 약물 오남용 등)

제11조(소집 절차) 제10조 1~5항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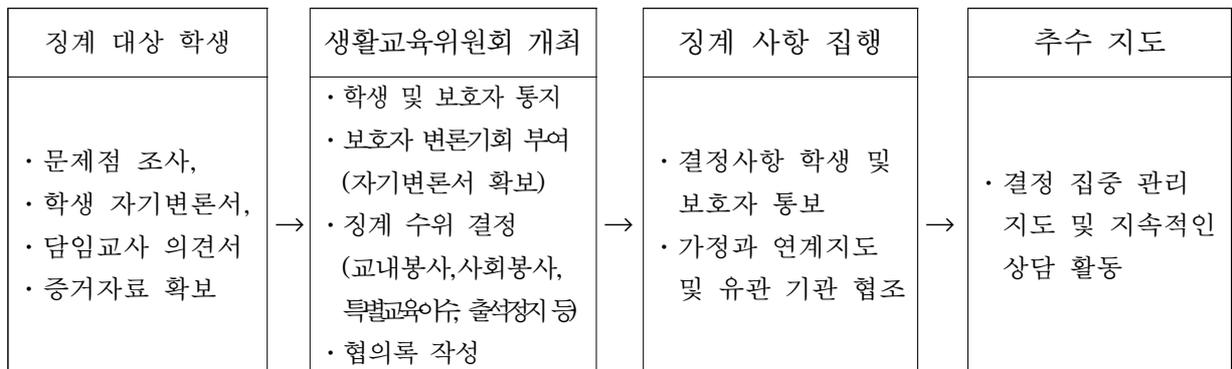
1. 일반적 사안의 절차

사안이 경미하고 학생이 우발적으로 잘못을 하거나 생활태도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경우는 아래의 절차에 따른다.



2. 중대한 사안의 절차

학생이 고의적으로 잘못을 저질러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생활태도 개선의 기회를 주었으나 개선의 여지가 부족한 경우, 학칙위반의 정도가 중대할 경우는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학생의 생활교육

제13조(생활교육의 종류)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교육을 할 수 있다.

1. 훈계, 격리(교실 안), 생활문 쓰기
2. 교실에서 분리조치 및 개별학습, 특별과제 부여
3. 학교 내의 봉사

4. 사회봉사
 5. 특별교육 이수
 6.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교육을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改悛)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교육을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14조(생활교육의 방법) 학생 생활교육은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 ① 훈계, 격리(교실 안), 생활문 쓰기
 1. 담임교사, 생활담당교사와 상담 및 생활문을 작성한다.
 2. 수업 중 필요한 경우 교실 안에 격리할 수 있다.
- ② 교실 분리 및 개별학습, 특별과제 부여
 1. 수업 중 필요한 경우 교실에서 분리 조치를 통한 별도 장소에서 개별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2. 교실에서 분리 조치와 함께 별도의 특별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 ③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3.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 ④ 사회봉사
 1. 하루 4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가.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 나.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4. 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 ⑤ 특별교육 이수
 1. 하루 6시간 이내로 하며,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나. 교육청에서 안내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등) 교육과정 이수

다. 정서·행동상 장애가 있는 학생이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라.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마.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을 처리한다.

⑥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4.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5.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 담당교사는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제15조(생활교육의 기준) [별표]의 기준을 참고하여 생활교육위원회가 협의·의결한 내용에 따른다.

제16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이의 제기) 생활교육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보

제18조(사안 설명)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생활교육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 업무 담당교사, 관련학생의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학생에게 생활교육 조치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9조(심의 절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의 사안 설명 및 질의응답
4.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 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5.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관련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 및 질의응답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8. 생활교육처분 내용 통보 : 생활교육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제20조(생활교육 내용의 통보) ① 학교장은 생활교육 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생활교육 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생활교육 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생활교육 조치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생활교육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생활교육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소풍, 수학여행 등) 및 정기 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 기간은 생활교육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2조(결과 처리·열람) ① 학생생활교육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② 학생생활교육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를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에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학생생활교육 기준(참고자료)

구분	항	내용	학생생활교육 기준			
			학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예절	(1)	교사에게 불손한 언어 사용과 반항적인 행동을 한 학생	○			
	(2)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3)	정보통신 예절(명의 도용, 해킹, 유언비어, 음란물 유포 등)을 지키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준법	(4)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의 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학생	○			
	(5)	타인의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부당하게 사용한 학생	○			
	(6)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	○		
수업	(7)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8)	수업이나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거부한 학생	○	○		
	(9)	시험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	○	○	
근태	(10)	무단결석, 무단지각, 무단조퇴를 상습적으로 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금품	(11)	남의 금품을 훔친 학생	○	○	○	
	(12)	남의 금품을 속여서 취득한 학생	○	○	○	
퇴폐 행위	(13)	사행성 오락이나 금품을 건 게임이나 놀이를 한 학생	○	○	○	
	(14)	학생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15)	불량서적 및 영상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16)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집단 행위	(17)	불법 모임 또는 비행 씨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18)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흡연 음주 약물	(19)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	○	
	(20)	흡연, 음주 및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	○	○
교권 침해	(21)	교사의 수업 진행을 방해한 학생	○	○	○	
	(22)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거나, 지시를 불이행한 학생	○	○	○	
	(23)	교원을 모욕하거나, 교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24)	교원에게 폭언을 한 학생	○	○	○	○
	(24)	교원을 폭행한 학생	○	○	○	○
	(25)	교원을 성희롱한 학생	○	○	○	○
기타	(26)	기타 교육상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	○	○	○